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소속으로 “안보정책자문단”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나.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“안보정책자문단”의 구성 및 기능,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나.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“국가정보원 제2국장”과 “서울지구기무부대장”을 각각 “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”과 “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으로 수정(안 제3조 제3항)
- 다.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제척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라.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마. 그 밖에 맞춤법,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 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11.1. ~ 11.21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하는데”를 “운영하는 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에 정한 자로”를 “호에서 정한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“서울시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5.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안전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자문단 구성·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1.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
2.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
3.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

-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 의장은 자문위원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1.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
 2.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3.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-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
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
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<u>운영</u>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협의회의</u> 위원은 다음 각 <u>호</u>에 <u>정한</u> <u>자로</u>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서울특별시</u> 교육감 3. ~ 5. (생략) 6. <u>국가정보원 제2국장</u> 7. (생략) 8. <u>서울시</u> 안전총괄본부장 9. <u>서울시</u> 소방재난본부장 10. <u>서울시</u> 비상기획관 11. ~ 14. (생략) 15. <u>서울지구기무부대장</u> 16.·17. (생략)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</u> <u>영하는</u> <u>데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호</u> <u>에</u> <u>정한</u> <u>사람으로</u>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서울특별시</u> 교육감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</u> <u>를</u> <u>소관하는</u> <u>국장</u>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9.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10. <u>서울특별시</u> ---- 1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</u> 16.·17. (현행과 같음)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협의회의</u> <u>위원이</u> <u>다음</u> <u>각</u> <u>호의</u> <u>어느</u> <u>하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7조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<u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<u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u></p> <p><u>2.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0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 제7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제3조 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 제11조(자문단 구성·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</u> <u>2.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</u> <u>3.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협의회 의장은 자문위원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9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략)</p>	<p><u>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</u> <u>2.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u>3.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</u> <p><u>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2조</u> ~ <u>제16조</u> (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

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박종필 (2133-4528)